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자에게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18. 9. 5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



1. 건 명 :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
2. 근 거 :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18. 9. 5. ~ 2018. 9. 18.(14일간)
5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최송희(Tel. 061-720-916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